

광진구 유료광고 심의위원회 의결서

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」 제7조 및
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5조 규정에 따라
 유료광고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합니다.

- 일 시 : 2016. 3. 25.(금) 14:00
- 장 소 : 기획상황실
- 심사내용 : 구 소식지 발행규격 변경에 따른 광고료 기준단가 조정
- 의결내용

구 분	규 격	기 준 가 격		비 고
		변경 전	변경 후	
중간면	1단×1cm	7,500	10,000	○ 기준(평균) 매수 : 90,000부 - 발행부수 증감 시 매 10,000부 당 광고료 10% 증감 ※ 부가세 별도 없음 ○ 흑백광고 : 칼라 광고의 70% ※ 1면 및 전면광고 게재 불가
끝 면		9,000	12,000	

- 기타사항 : 회의록은 본 의결로 같음하며 그 작성을 생략함.

2016. 3.

광진구 유료광고 심의위원회

위 원 장	기획경제국장	(인)
부위원장	세 무 1 과 장	(인)
위 원	정책홍보담당관	(인)
위 원	총 무 과 장	(인)
위 원	기획예산과장	(인)
위 원	재 무 과 장	(인)